

(주)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내부 정보관리 규정

제 1장 총칙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.정확한 공시 및 임원.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용어의 정의)

- 1. 이 규정에서 "내부정보"라 함은 코스닥시장 공시 규정(이하 "공시 규정"이라 한다) 제 1 편에 의한 공시 의무사항과 그 밖에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 상황이나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.
- 2. 이 규정에서 "공시책임자"라 함은 공시 규정 제 2 조 제 4 항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.
- 3. 이 규정에서 "임원"이라 함은 이사(「상법」 제 401 조의 2 제 1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) 및 감사를 말한다.
- 4. 제 1 항부터 제 3 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.

제 3 조 (적용 범위)

공시,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
제 2 장 내부정보의 관리

제 4 조 (내부정보의 관리)

- 1. 임원.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고,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2. 대표이사는 내부정보 및 그와 관련된 문서 등의 보관, 전달, 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내부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 5 조 (공시책임자)

- 1.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를 정하여 이를 한국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. 공시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.
- 2.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① 공시의 집행
 - ②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 점검 및 평가
 - ③ 내부정보에 대한 검토 및 공시 여부의 결정
 - ④ 임원.직원에 대한 교육 등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
 - ⑤ 내부정보의 관리를 담당하거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임원.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
 - ⑥ 그 밖에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한 업무
- 3.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.
 - ① 내부정보와 관련된 각종 서류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
- ② 회계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, 그 밖에 내부정보의 생성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임원.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
- 4.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,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.
- 5.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대표이사에게(또는 이사회에)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6 조 (공시담당자)

- 1. 대표이사는 공시담당자를 정하여 한국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.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.
- 2. 공시담당자는 내부정보관리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① 내부정보의 수집과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
 - ② 공시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
 - ③ 공시 관련 법규의 변경 등 내부정보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확인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
 - ④ 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제 7 조 (내부정보의 집중)

임원 및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시에 공시책임자에게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- 1. 내부정보가 발생한 경우
- 2. 내부정보 중 이미 공시된 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3. 그 밖에 공시책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

제 8 조 (내부정보의 사외제공)

- 1. 임원.직원이 업무상의 이유로 회사의 거래상대방.외부감사인.대리인, 회사와 법률 자문.경영 자문 등의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내부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.
- 2. 제 1 항의 경우 공시책임자는 관련 내부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.

제 3 장 내부정보의 공개

제 9 조 (공시의 종류)

회사의 공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- 1. 공시 규정 제 1 편 제 2 장 제 1 절에 따른 주요 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
- 2. 공시 규정 제 1 편 제 2 장 제 2 절에 따른 조회공시
- 3. 공시 규정 제 1 편 제 2 장 제 3 절에 따른 공정공시
- 4. 공시 규정 제 1 편 제 3 장에 따른 자율공시
- 5. 법 제 3 편 제 1 장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
- 6. 법 제 159 조, 제 160 조 및 제 165 조와 공시 규정 제 1 편 제 2 장 제 4 절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
- 7. 법 제 161 조에 따른 주요 사항보고서의 제출
- 8.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른 공시

제 10 조 (공시의 실행)

- 1. 공시담당자는 제 9 조에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어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2. 공시책임자는 제 1 항의 내용과 서류 등이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공시하여야 한다.

제 11 조 (공시 후의 사후조치)

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 12 조 (언론사의 취재 등)

- 1. 언론사 등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취재요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이에 응한다.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임원.직원이 취재에 응하게 할 수 있다.
- 2. 회사가 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.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도자료의 배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.
- 3. 언론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임원.직원은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공시책임자는 관련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 13 조 (기업설명회)

회사의 경영내용,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기업설명회는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 개최하여야 한다.

제 4 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

제 14 조 (단기매매차익의 반환)

- 1. 임원과 법 제 172 조 제 1 항 및 법 시행령 제 194 조가 정하는 직원은 법 제 172 조 제 1 항의 특정 증권 등(이하 "특정 증권 등"이라 한다)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 증권 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(이하 "단기매매차익"이라 한다)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.
- 2. 회사의 주주(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가 회사에 대하여 제 1 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 회사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3. 증권선물위원회가 제 1 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경우 공시책임자는 지체 없이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.
 - ①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
 - ② 단기매매차익 금액
 - ③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날
 - ④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
- ⑤ 회사의 주주가 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, 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를 대위(代位)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
- 4. 제 3 항의 공시 기간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간 또는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은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.

제 15 조 (특정 증권 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)

임원과 법 제 172 조 제 1 항 및 법 시행령 제 194 조가 정하는 직원은 특정 증권 등의 매매, 그 밖의 거래를

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16 조 (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)

임원·직원은 법 제 174 조 제 1 항이 정하는 미공개 중요정보(계열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포함한다)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,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.

제 5 장 보 칙

제 17 조 (교육)

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 규정 제 36 조 및 제 44 조 제 5 항에 따른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 등을 이수 하여야 하고, 공시책임자는 교육내용을 관련 임원.직원에게 알려야 한다.

제 18 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.

제 19 조 (규정의 공표)

이 규정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. 규정을 개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